

시민고충처리위원회(지방옴부즈만) 고충민원 처리사례 1

□ 민원 제목 : 00동 도서관 관급자재 발주 절차 위반

□ 신청 취지

- 00동 도서관 지열·가스엔진 히트펌프 구매 건을 분리·축소 발주하여 조달관련 행정 법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적극 조사 요청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도서관1층에 위치한 어린이집 복도 부분 및 3층, 5층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홀부분은 장기간 머무는 장소가 아니고 이동통로에 해당하여 냉·난방의 필요성이 낮아 삭제하였을 뿐 단가계약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분할하여 발주한 것은 아니며, 전기히트펌프는 예산상의 사유로 발주하지 못함

□ 사실관계

- 00동도서관 복합시설 신축공사를 위해 건축사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체결 후 설계도를 포함한 설계도서를 납품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 착공
- 공사에 필요한 냉·난방기를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시공사에게 공급
- 시공사에게 제공한 냉·난방기의 수량은 당초 설계서에 나타난 수량보다 감소됨
- 당초 설계서에 따라 냉·난방기를 구매할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, 전기히트펌프 미발주 및 냉·난방기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단가계약에 의해 냉·난방기 업체가 선정

□ 관계 법령 등

-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-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

□ 판단 및 결론

- 냉·난방기 중 히트펌프용 실내기가 2개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가계약을 통해 냉·난방기가 공급되어 단가계약을 위한 축소 및 분할발주 의심의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감소된 냉·난방기가 추가 발주 되는 등의 사정과 같은 합리적 증거가 없는 한 부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긴 어려움
- 그러나 냉·난방기 설치필요성이 낮다 하더라도 담당주무관의 판단 이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검토 절차를 진행하여 추후 냉·난방기 설치에 대한 민원을 방지하고, 다시 냉·난방기를 설치하는 중복공사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어야 한다고 판단
- 특정 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방식 및 부패유발 및 부실계약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. 8. 22.字「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」을 수용하고,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

시민고충처리위원회(지방옴부즈만) 고충민원 처리사례 2

□ 민원 제목 :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

[000동 건물 주차장법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]

□ 신청 취지

- 000동 건물 임대인(신청인)으로 임차인이 구청에 영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던 중 영업 장소가 옥내주차장이라 하여 주차장법 위반으로 사전 통보받음(원상복구 명령)
- 본인도 잘못이 있지만 잘못된 장소에 영업허가를 내준 구청도 일부 책임이 있음
- 따라서 현재 영업 중인 세입자의 계약만료(2021.12월)까지 행정처분 (이행강제금 부과) 유예 요청

□ 피신청인 등의 주장

- 000동 지상 건물 식품영업허가 신청서에 1층(약 20㎡) 제2종 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장소를 적시하여 신청하였고, 건축물 대장 확인결과 위법 건축물 표기등 기타 이상이 없었기에 영업 허가증을 교부함

□ 관계 법령 등

- 건축물 관리법
- 건축법
- 주차장법

□ 사실관계 및 판단

○ 신청인 건물 음식점 영업허가 적법성 및 책임 소재

- 신청인은 최초 000동 건물 식품 영업신고서에 1층 약20m² (일반음식점) 신고하고 영업 신고필증 교부 후 실제로는 1층 주차장 26.51m²을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며, 건물주로 본인 건물을 유지관리 책임 의무(건축물 관리법 12조) 위반

○ 건축주의 건물 유지관리 책임

- 건축주는 건물의 사용검사 후 건축물이 멸실되어 소멸시까지 건축물을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며(건축물 관리법 12조) 또한 행정기관은 위반 건축물 적발시 조치를 하도록(건축법 제79조) 되어있음

○ 건물 세입자 임대기간(2021.12월)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요청

- 신청인의 건축물은 주차장법 19조의4(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) 위반사항임. 다만 행정청에서 위반 건축물 조치시 이의 신청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권고

□ 결론

- 피신청인은 민원인의 관내 건축물에 식품영업 신고서 등 업무를 처리할 경우 건축물 대장상 위법 건축물 표기 여부 확인 및 옥내 주차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건축과 등 관련부서에 협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

-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